

서울중앙지방법원 2020. 6. 12 선고 2020가단1576 판결 [구상금 청구의 소]

전 문

원고A 주식회사

소송대리인 B

피고1. 주식회사 C

2. D

3. E

변론 종결2020. 5. 29.

판결 선고2020. 6. 12.

주 문

1. 원고에게,

가. 피고 주식회사 C, D은 연대하여 33,884,978원 및 그 중 24,438,375원에 대하여,

나. 피고들은 연대하여 878,923,846원 및 그 중 632,253,367원에 대하여

각 2018. 7. 1.부터 2020. 4. 9.까지 연9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각 비율로
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2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 :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2.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)

판사신현석

별지